제256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2020. 1. 6.(월) 11 : 20
행 정 복 지 위 원 회

검 토 보 고

1.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유병희

-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❍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에 적극적·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,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조례 제명 변경

-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⇒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❍ 고문변호사 수당 조정(안 제6조)

- 20만원 ⇒ 30만원

❍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미비점 보완

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　　타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 : 2019. 10. 31. ~ 11. 13.(14일간)

- 기간 중 의견 :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【붙임1】

4) 성별영향분석평가서 : 【붙임2】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체계의 현실화를 통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